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2014. 2. .
발 의 자	강승수 의원 외 10명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승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 2. 14

발 의 자 : 강승수, 권기만, 김성현,
김익수, 박세진, 박주연,
손홍섭, 윤영철, 정하영,
허 복, 황경환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에 대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나. 보훈예우수당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붙임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4조로 제9조를 제15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② 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한다.

제9조(수당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거주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 분기별 말에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 지급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8조(이 동)</u> <u><신 설></u>	<u>제14조 (현행 제8조와 같음)</u> <u>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시장</u> <u>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u> <u>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u> <u>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u> <u>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u> <u>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u> <u>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에</u> <u>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지급순위</u> <u>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u> <u>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u> <u>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u> <u>원대상에서 제외한다.</u>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 자로 통보된 사람 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 당 지급대상자 ② 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한다.
<u>제9조(이 동)</u> <u><신 설></u>	<u>제15조 (현행 제9조와 같음)</u> <u>제9조(수당의 신청) ① 제 8조에 따</u> <u>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하는 사람</u> <u>(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u>

제10조 (이 동)

<신 설>

<신 설>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거주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 분기별 말에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 지급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신 설>

<신 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보훈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본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증 사본 1부.				

관 련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재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